

[별표 1] 연구실적 인정기준 (제16조 제1항 관련)

분야별	구 분	학 회 지			
		국내		국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	SCI급 학술지	일반학술지
학술논문	단독	100점	20점	300점	150점
	2인	70(80)점	14(16)점	210(240)점	105(120)점
	3인	50(60)점	10((12)점	150(180)점	75(90)점
	4인 이상	30(40)점	6(8)점	90(120)점	45(60)점
	석사학위논문	100점			
	박사학위논문	200점			
저 서	구 분	전문서적	교과용 1종도서	번 역 서	개 정 판
	단독	100점	100점	50점	30점
	2인	70(80)점	70(80)점	30점	10점
	3인	50(60)점	50(60)점	10점	0
	4인 이상	30(40)점	30(40)점	0	0
창 작 활 동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2.연구영역」 중 창작활동 세부기준 준용				
산업재산권	발명특허 건당		100점 이내(심의하여 인정)		
자 격	기술사 자격취득		150점		

* ()의 숫자는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인 경우임

- * 비고 : 1. 국내 일반학술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만을 인정한다.
 2. 국제 일반학술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만을 인정한다.
 3. 저서는 국내외 사업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저자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 중·고등학교 1종교과용 도서, 전문대학 이상 교재만 인정한다.
 4. 연구실적은 전공 및 담당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하여 인정한다.

<창작활동 인정기준>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2-6 체육 태권도 분야	공연·발표	국제	단독공연(주연)	150점/회	
			해외초청 시범 공연 연출, 기획, 안무, 감독, 제작		
			합동공연	120/회	
		국내	단독공연(주연)	100점/회	
			전국단위 문화행사 공연 연출, 기획, 안무, 감독, 제작		
			합동공연	70점/회	
	감독·코치·심판	국제	올림픽	150점/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100점/회	
			아시아 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50점/회	
			종목별 국제 경기대회	30점/회	
	국내	공인된 전국대회	20점/회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1.5.13.>

2-6 체육·태권도 분야

- 가. 발표는 단독 공연 또는 주역 100%, 2~3인 연합공연 또는 조역 70%, 4인 이상 합동공연 또는 단역 50% 인정
- 나. 역할이 중복 된 경우 최대배점만 인정
- 다. 동일한 발표 내용의 재공연은 1회에 한하여 30%만 인정
- 라. 국내·외의 저명 공연(대회) 및 단체의 범주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마. 전국대회는 대한체육회산하경기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대학의 총장배, 태권도 관련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기준으로 함
- 바. 올림픽은 국제기능올림픽을 포함하며, 전국체전 또는 국내선수권은 국내기능경기대회를 포함함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2-8 영상 공연 분야	장편	감독, 제작, 기획, 연출, 극작, 희곡, 시나리오	국제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50점	
			국내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00점	
				기타 연극 및 영화제 상영작	70점	
		부분별감독, 번역, 디자인	국제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 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20점	
			국내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80점	
		단편	감독	국제	저명 공연 및 영화제 상영작(30분 이상 60분 미만)	80점
	국내			저명 공연 및 영화제 상영작 TV방영물(30분 이상 60분 미만)	70점	
	제작, 스텝		국내	TV방영물(30분 이상 60분 미만)	40점	
	연기	TV방영	1회 60분 이상/회당		30점	150점/연
			1회 30분 이상/회당		20점	
			1회 30분 미만/회당		10점	
		공연·영화	장편		150점	
단편(30분 이상 60분 미만)			100점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2-8 영상공연분야

- 가. 연극희곡 및 영화 장편시나리오의 경우 연극,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한 희곡이나 시나리오 단행본인 경우에 한함
 - 나. 단편 영화의 경우 시나리오와 촬영된 영상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다. 모든 동일 작품의 재공연이나 순회공연은 인정하지 않음
 - 라. 메인감독은 연극, 영화의 파트별 감독을 말함
 - 마. 스텝 디자인은 조명, 음악, 의상, 분장, 미술(프로덕션 디자인), 안무, 액팅코치, 특수효과(시각), 음향, 녹음, 촬영, 편집, 슈퍼바이저를 말함
 - 바. 공동 제작 및 연출, 스텝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원 인정환산율을 적용
 - 사. 연기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을 원칙으로 하며 조연은 주연의 70%를 인정
 - 아. 연구업적의 기산일은 상영 및 공연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 ※ 국제 저명 연극제 및 영화제란 아비뇽 국제연극제, ITI Theatre of Nations 연극제, 에딘버러 연극제, 스트라트포드 연극제, 더블린 연극제, 런던 국제 연극제, 베세토 연극제, 아카데미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동경 영화제, 홍콩영화제 등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영화제를 말함
- ※ 국내 저명 연극제 및 영화제란 서울국제연극제, 전국연극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과천마당극제, 마산국제연극제, 거창연극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춘사 나운규 영화예술제, 서울독립영화제, 대한민국의대영화제, 영상기술학회, 미탁 영화제, 미장센 영화제, 부산국제아시아 단편영화제를 말함
- ※ 공동주연시 단독 주연급으로 인정

[별표 2] 연구 및 교육경력 산출기준(제19조 관련)

경 령 내 용	환산인정률 (%)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②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③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④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⑤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50(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겸임교수, 초빙교수(객원교수, 강의교수 등)의 교육경력	50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②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40
③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④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다. 조교 및 체육 코치 등	
①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②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7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
2.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①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①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 한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①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마. 다음의 연구원(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①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②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100
④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바.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
3. 산업체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등 근무경력	
①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②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나.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	
①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대기업체 등 .중기업체	70
②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③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④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대기업체 등 .중기업체	5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관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②변호사 개업기간	100
③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 개업기간	50
④한국 해양대학, 부경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기관사)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⑤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
라. 의사등 근무경력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50
②의(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50
③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④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50
마. 성직자 근무 경력	
①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50
②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근무경력	
①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	50